

## 외국인 유학생 상벌 규정(3-7-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 41조, 제42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 상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유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 및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유학생
2. 타 유학생으로부터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로가 현저한 학생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유학생
4. 재학기간중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유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국제교육원장은 제3조의 포상대상 유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개정 2010.2.1.)

1. 공적조서 1부
2. 학과장 또는 국제교육부장의 추천서와 의견서 각1부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0.2.1.)

제6조(포상의 기록) 국제교육원에서는 포상 내용을 학적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 이를 명기할 수 있다.(개정 2010.2.1.)

제7조(징계 및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유학생
2. 학생 지도상 타 유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유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유학생
4.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유학생
5.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시킨 유학생
6.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학생
7.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유학생
8. 출입국관련 법규를 위반한 유학생
9.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8조(징계의 발의) 국제교육원장은 제7조의 징계처분 대상 유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개정 2010.2.1.)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할 경우 학과장 의견서 1부

제9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1주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근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언행이 불량한 유학생
2. 수업태도가 불량한 유학생
3.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유학생
4. 교내에서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킨 유학생
5. 학교의 허가없이 공고물 및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학교의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유학생
6. 그 외 상기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학생

제11조(유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 유학생
2.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유학생
3.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유학생
4. 학우(유학생, 내국인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유학생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유학생
6.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유학생
7.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유학생
8. 학교의 허가없이 유학생을 선동할 수 있는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유학생
9. 그 외 상기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학생

제12조(무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 유학생
2. 고의로 교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학생
3.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없이 집회를 주동한 학생
5.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학생
6. 학교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시킨 학생
7. 그 외 상기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학생

제13조(퇴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퇴학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유학생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국내법에 의거 형이 확정된 유학생

- 3. 재학 기간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유학생
- 4.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유학생
- 5. 학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1개월이상 결석(이탈)한 유학생
- 6. 국제교육원의 허락없이 타 대학을 지원한 유학생
- 7. 출입국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유학생
- 8. 그 외 상기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학생

제14조(징계의 결정) ① 징계처분의 결정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0.2.1.)

②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학생 본인 또는 학과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 지도)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유학생은 징계 기간 중 학과장 및 국제교육원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2.1.)

제16조(권리 정지) ① 근신처분을 받은 유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가가 금지된다.

②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유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7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 및 유기정학의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제된다.

○ ② 무기정학의 경우 학과장 또는 국제교육원장의 징계 해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해제한다.(개정 2010.2.1.)

제18조(징계의 감면) 국제교육원장은 징계대상 유학생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유학생이 개선의 의지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2.1.)

제19조(통보) 국제교육원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학과장, 학부형, 유학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교내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